

##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공무원)중 "필요한 공무원 21명"을 "필요한 공무원 23명"으로 한다.

## 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
<p>제5조(공무원)기획단에</p> <p>단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</p> <p>21명을 두되 직급별 정원</p> <p>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공무원) -----</p> <p>-----필요한 공무원</p> <p>23명을 -----</p> <p>-----</p>